

##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2. 11. 8.

제안자 : 김정복 의원의

### 1. 수정이유

- 혼돈이 예상되는 문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하고자 함.

### 2. 수정 주요골자

- 불용품소요조회 대상물 “2천만원 이상인 경우”를 “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며”로 수정함. (안 제16조 제3항)

## 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6조 제3항 “2천만원 이상인 경우”를 “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며”로 한다.

## 조 문 대 비 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1조~제15조 (생략)	제1조~제15조 (개정안과 같음)
<p>제16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</p> <p>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, 축산물, 기타 생산물을 폐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재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단위당 물품취득가격(장부가격 기준)이 단가 <u>2천만원 이상인 경우</u> 조달청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.</p>	<p>제16조(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)</p> <p>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단위당 물품취득가격(장부가격 기준)이 단가 <u>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하며</u> 조달청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할 수 있다.</p>